

8. 거주관행과 가족

[수업을 위한 질문들]

1.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의 구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혈연과 親疎 범주, 호적[법률], 同居, 가족 간의 愛情 등의 감정적 요소.
2.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일까?
3. 가족으로 인정하는[법률 또는 관습] 혹은 느끼는 범주는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다.
4. 고려는 가족의 법률적 범주는 확인되지 않으나, 혼인방식으로 솔서혼, 혈연 계승 관념과 親疎 범주에 대한 통념, 同居와 가족 간의 愛情 등의 요소 등이 가족 형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재혼과 가족관계

1) 前夫 자녀와 義父의 관계 (:여자의 재혼)

- 前夫 자녀와 義父의 관계를 살펴본다.

- 前夫 자녀와 義父가 함께 거주하는 사례

○ 공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다. 志學이 되었으나 義父가 집이 가난하다고 하여 다른 학문을 시키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同業하게 하였다. 그 어머니가 不可하다고 고집하며 말하기를 “첩이 衣食의 연고로 栢舟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遺腹은 다행히 지금 아이가 되어 학문에 뜻을 두고 있으니 반드시 아버지의 본래 무리에 속하여 발꿈치로 먼지를 뒤따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곧 내가 무슨 얼굴로 지하에서 전 남편을 다시 보겠습니까”라고 하며, 드디어 그 뜻대로 용기있게 결단하였다. (李勝章 묘지명)

- 前夫 자녀와 義父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례

○ 虎狼이 비록 사나워도 새끼는 해치지 않는데 어떤 어머니는 오히려 아이를 길가에 버렸구나
금년 곡식에 먹을 것이 모자라진 않을텐데
새로 시집가매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리

금년 곡식이 흉년들어 굶주린다 해도
 아이가 먹는다면 몇 숟가락 되겠는가
 어미와 아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었으니
 세상 민심 야박함을 이제야 알겠구나
 (동국이상국후집, 권1, 路上棄兒)

2) 前妻 자녀와 繼母의 관계 (:남자의 재혼)

- 前妻 자녀와 繼母의 관계를 살펴본다.

- 前妻 자녀와 繼母(異母)[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사례

○ 崔諫은 先夫人 이씨가 낳았는데 지금 신호위장사 대상부녹사가 되었다. 부인은 자기 아들처럼 撫養하였고, 최간은 어려서 자애로운 양육을 받았으므로 그의 어미처럼 섬겼다. 지금 素冠을 입고 슬퍼함이 다른 사람에 떨어지지 않는다. (최유청처정씨묘지명, 1170)

○ 어미 이씨는 悅城郡夫人에 추증되었는데 皇考보다 먼저 죽었다. 계모 이씨는 본래 京師의 衣冠의 자식이었다. 공은 어려서 어미가 죽었으나 떠돌지 않고 나이 17세에 京師에 들어가 비로소 就學하였다. 계모 이씨의 집에서 길렀는데, 異母의 (형 또는 제) 허정선사 曇曜와 우애가 매우 돈독하고 지극했다. (이문탁묘지명, 1181, 명종 11)

- 前妻 자녀가 異母(계모)[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은 사례

○ 부인은 (중략) 어려서 어미를 잃고 外家에서 성장했다. 나이가 겨우 비녀 꽃을 때가 되자 德이 얼굴에 가득했고 행실은 말을 실천하였으니 婦道가 있었다. 드디어 追封 좌복야 柳英材 공에게 시집갔다. (유영재처조씨묘지명, 1218, 고종 5)

○ 영락 14년(태종 16, 1416) 丙申에 閔夫人(어미)이 죽었는데, 부인의 나이 17세였다. 禮制에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병을 얻어 위독하게 되었으나 監正公(:아버지 박홍신)이 힘을 다해 치료하니 마침내 나았다. 監正公이 西川里에 再娶했으나 금슬이 좋지 않았고 또 벼슬하여 서울로 돌아가자, 부인은 외조모 孫夫人에게 의지하여 살았고 庶母 小蓮이 항상 돌봐주었다. 종종 繼母를 만나러 西天에 갔다. 己亥년 6월에 監正公이 左軍知兵馬使로서 따라가 對馬島를 토벌하다가 尼老郡에서 戰沒하였다. 다음 해에 孫夫人이 공이 武藝로 등용되어 몸을 異域에서 잃었다고 크게 상심하였기에, 儒로서 본래 行義가 있는 자를 얻어 사위로 삼고자 하여 마침내 夫人을 나의 先公(:김숙자)에게 시집보

냈다. (『점필재집』 彝尊錄, 부록, 先妣朴令人行狀)

○ 공의 이름은 有一이다. 字는 享天이고 恒陽縣 사람이다. (중략) 仁幸은 상의봉어 德侯를 낳았는데 이가 실로 공을 낳았다. (중략) 공의 母는 咸氏인데 成昌의 딸이다. 奉御君이 鄉閭에 물러나 거했다. 공은 태어난 지 3년 만에 고아가 되었고, 몇 년 되지 않아 母夫人 역시 시름하다 죽으니, 母兄의 집에서 길렀다. 나이 겨우 15세에 걸어서 京師로 들어갔다. 당시에 재상 李俊陽이 본래 봉어군과 친했는데 그가 어린 것을 민망히 여겨 집에 불러 길렀다. (함유일묘지명, 1185, 명종 15)

○ 祖는 이름이 宗儒인데 重大匡 都僉議贊成事 上將軍 判摠部事 致仕이고 시호는 忠順이다. (중략) 공은 元貞 을미년 12월 무진에 태어났다. 5세에 어미를 잃고 忠順에게서 자랐다. (민사평묘지명, 1359, 공민왕 8)

○ 어려서 어미를 잃고 姉夫 全公義의 집에서 자랐다. 이미 현달하매 公義를 아버지같이, 누이를 어머니같이 섬겼다. (고려사 권112, 열전 권25, 李公遂)

- 전처 자녀와 계모의 관계

○ 上이 말하기를 “聖人이 喪制를 만들며 혹은 情으로 하고, 혹은 義로서 했다. 繼母된 자가 少兒 때부터 키워 길렀으면 母는 義子를 자기 자식처럼 했다고 할 만하고, 子는 繼母를 親母와 같다고 할 만하므로, 삼년상을 입는 것은 情義에 합당하나, 만약 그 아버지가 만년에 繼母를 얻어 죽으면 그 자식은 繼母와 더불어 官에 고하여 爭訟하는 자도 가끔 있으니 삼년상을 입는 것은 情義에 매우 합당하지 않다. 聖人이 繼母를 위해 삼년상을 만든 것은 이러한 법을 만들어 백성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繼母의 重함을 알게 될 것이라 하여 상복을 입힌 것이니 이는 義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무릇 禮를 제정함에 人情도 참작하여 만들어야 행하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니 繼母를 위해 삼년상을 입는 것은 내 마음에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 萬戶 奇弘敬이 初娶하여 尙廉을 낳았고, 再娶하여 尙質을 낳았으며, 金氏를 三娶하여 세 아들을 낳았다. 弘敬이 죽으려 하매 金氏에게 田과 奴婢를 주었다. 尙廉이 오로지 차지하고자 하여 그 文契를 빼앗으니 金氏가 憲府에 고소하였다. 尙廉이 그를 해치고자 하여 밤에 김씨 집에 들어가 큰 소리로 김씨와 尙質이 私通했다고 하고 尙質을 끌어다가 金氏의 몸 위에 놓고 두 사람의 머리털을 자르고 이불과 요로 싸서 결박하여 刑曹에 고했다. 여러 날을 推問해도 실상을 얻지 못하자 義禁府에 옮겨 국문하도록 명했다.(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정월 을묘, 1430)

- 同父異母의 姉妹와 혼인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에 대한 이해

○ 선종 2년 4월, 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姉妹가 규정을 어기고 혼인하여 낳은 소생은 벼슬길을 禁錮한다.(『고려사』 권75, 선거지 3, 限職)

2. 守節하는 여자의 거주와 봉양 사례

- 守節하는 여자의 거주 형태와 봉양 사례를 살펴본다.

- 守節하는 여자가 친정에 거주하는 사례

○ 송씨는 여산 사람이라. 제 남진 鄭希重이 일찍 죽거늘 거상삼년을 내내 울어 지내니, 아버이 젊어서 홀어미 된 줄 어엿비 여겨 남진 얼오려 한 대, 송씨는 죽음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시어미 김체에 있어 다른 자식 없으니 내 남진 곳 얼하면 시어미 어디 가서 의탁하리오” 하거늘, 아버이 듣지 아니한대, 송씨 아기 업고 도망하여 시집에 가서 여러 해를 돌아오지 아니하더니, 아버이 그 지극한 정성을 감격하여 집 곁에 별실을 지어준대, 송씨가 시어미를 데려와 살며 친히 음식을 만들어 주더니 시어미 죽거늘 거상삼년을 내내 울어 지내니라. (『동국속삼강행실열녀도』 宋氏誓死)

- 守節하는 여자가 언니, 그리고 결혼한 딸과 외손녀와 거주하며 봉양을 받는 사례

○ 節婦 조씨는 遂寧縣 사람이다. … 조씨는 13세에 隊尉 韓甫에게 시집가서[適] 딸 하나를 낳았다. 그 시아비 壽寧宮錄事 光秀가 일본을 동정하매 신사년 여름에 軍中에서 죽었고 신묘년 여름에 甫도 또한 습부兵에게 죽었다. 조씨는 과부가 되자 언니를 따라 갔는데, 그 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자[適] 이에 딸을 따라 갔다. 딸이 1남 1녀를 낳고 일찍 죽자 손녀를 따라 지금까지 살았다. 조씨는 30세가 못 되어 아비와 시아비, 남편이 연달아 전쟁의 진영에서 죽어 홀로 50년을 살았다. (동문선 권100, 傳, 節婦曹氏傳)